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5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시세의 감면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7조)
- 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및 과학관에 대해서만 세제를 지원하도록 개선(안 제8조)
- 다.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0조)
- 라. 농협중앙회 등이 구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을 「감면조례」로 이관하여 감면유지(안 제10조의2)
- 마. 2001~2007까지 7~10인승 자동차가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 구분이 변경되어 「과세특례법」 및 「속초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자동차세를 감면하였으나, 2007년까지 적용시한이 만료되어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세부담 완화(안 제18조)
- 바.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안 제20조)
- 사.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조문 정비(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불임

-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8쪽)
- 2) 「도서관법」 제31조, 제40조 (8쪽)
- 3) 「과학관육성법」 제6조 (9쪽)
- 4)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47조 (9쪽)
- 5) 「지방세법」 제266조 (10쪽)
- 6) 「지방세법」 제196조의5 (11쪽)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11쪽)
- 7)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12쪽)
- 8) 「지방공기업법」 제2조 (13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2007. 10. 24 ~ 11.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3)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 불임 (14쪽)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8조제6호를 “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으로 하고, 제7호를 “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를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로 하고 제2항중 “제42조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8조본문중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조 제1호중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하며,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본문중 “부동산”을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본문중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8조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도서관 및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생 략) 3. (생 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제8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①----- ----- ----- 1. -----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제47조제1항----- ----- -----

<신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제10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1.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략) 2. (생략)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 ----- ----- ----- ----- ----- ----- ----- ----- -----
---	---

관계법령 발췌

<안 제7조 관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 함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이어야 한다.

<안 제8조 관련>

□ 도서관법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과학관육성법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설립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안 제10조 관련>

□ 문화재보호법

제5조 (보물 및 국보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형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의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문화재청장은 제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 (문화재의 등록) ①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할 수 있다.

<안 제10조의2 관련>

□ 지방세법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③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경감률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안 제18조 관련>

□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승합자동차세율)

소형일반버스 65,000원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23호"전방조종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핸들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이내인 자동차를 말한다.

⇒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 세액예시(신차기준)

차 종	배기량(cc)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방조종자동차 (그레이스등)	2,607	65,000	65,000	253,500	499,550	745,600
트라제	1,997	185,700	259,610	347,870	436,140	519,220
스포티지	2,184	220,480	312,310	418,490	524,680	624,620
스타렉스	2,476	248,040	354,060	474,450	594,830	708,130
싼타페	2,656	265,030	379,800	508,940	638,070	759,610
무쏘	2,874	285,610	410,980	550,710	690,440	821,960
카니발	2,902	288,240	414,980	556,080	697,170	829,970
테라칸	3,497	344,400	500,070	670,090	840,110	1,000,140

<안 제20조 관련>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 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 (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사업추진계획의 승인·변경승인 및 고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1조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시·군세감면조례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이하인 주택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8조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일 것	○ '07.7.1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08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역모기지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정확하게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 ----- ----- ----- ----- ----- ----- ----- ----- -----	○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시설에 한하여 세제지원 ○ 「도서관 및 도서관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법령 변경 ('06.10.4)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도서관 및 도서관 홍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 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 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 조, 제6조 내지 제8조 와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 2. (생략)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 42조제1항에 의하여 등 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 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도서관법」 제31 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 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 제 6조의 규정 ----- 제11조 【문화재에 대한 감 면】 ① ----- ----- ----- ----- 1. ----- 제5 조, 제7조 내지 제9조 ----- ----- -----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제 47조제1항 ----- ----- ----- 제11조의2 【농협중앙회 등 에 대한 감면】 ① 법 제 266조제3항에서 “구판사 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 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 ('07.4.11)에 따라 인용조문 정정 ○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일반조례」로 정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로 이관
--	---	---

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	1. <u>구매·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2. <u>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3. <u>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4. <u>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9조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 2009년 12월 31일까지 ----- -----. 1. -----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 2. -----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	○ 2007.12.31 감면시한 만료에 따라 세부담이 급등하므로, 2009.12.31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	--	--

<u>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u>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u>부동산</u>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략) 2. (생략)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u>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u>와 <u>지방자치단체</u>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 ----- ----- ----- <u>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u>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u>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u> ----- ----- ----- ----- ----- ----- ----- ----- ----- ----- ----- ----- ----- ----- ----- ----- ----- -----.	○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문제가 있어, 감면대상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제한
--	---	---